

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공모

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'예비 사회적기업가'를 발굴·육성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지원기관(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지원기관 포함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역량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0년 12월 22일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1 창업지원기관 공모 개요

□ 목적

- 사회적경제분야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공간,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역량있는 창업지원기관을 선정하여
-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

□ 선정규모 및 분야

- (선정규모) 30개 내외

* '21년 예산(안)에 의해 총 850팀 육성 예정

** ('20년 창업지원기관) 권역기관 17개소, 업종특화 3개소, 권역+업종특화 9개소, 재도전 1개소, 권역+재도전 3개소 등 총 33개소 운영

○ 창업지원기관 사업비

- 사업운영비, 창업팀 운영비, 교육·멘토링비로 구성

<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구성(안)(‘21년 20팀 육성을 희망하는 경우)>

구분	산출내역	사업비
사업운영비	3,000,000원×20팀	60,000,000원
창업팀 운영비	300,000원×20팀	6,000,000원
교육 및 멘토링비	약 4,700,000원×20팀	약 94,000,000원
합 계		160,000,000원

* 교육 및 멘토링비는 850팀 선정시 기준단가로, 창업팀 선정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창업지원기관별 세부 사업비는 육성 창업팀 수 배정 및 우선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

○ (모집분야) 권역기관, 특화기관, 재도전기관으로 구분

모집구분	주요내용
권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권역은 광역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 -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권역을 담당하거나, 1개 권역을 2개 이상 기관이 담당할 수 있음 -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팀 육성계획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화 계획 제시 필요
특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에 특화된 창업팀 육성 * (예시) IT, 기술, 환경, 에너지, 문화예술, 농산촌, 도시재생, 글로벌, 생활SOC 등 -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등 정책수요 및 현장수요를 반영한 업종 및 특화분야 우대
재도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거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에 대한 재도전 지원 (직전년도 창업팀 제외) - 마케팅, 판로, 외부 투자(자금조달) 등이 가능한 다양한 자원연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

- 심사기준에 충족하는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모집분야의 창업지원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1개 창업지원기관이 권역·특화기관 또는 권역·재도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, 2개 이상의 특화 분야를 지정할 수 있음
- 단, 권역·특화 기관 병행 시 창업팀 50% 이상을 특화분야에 배정
- * 모집 및 선정 시 특화분야 창업팀이 전체 배정팀 대비 50%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정팀 수 축소

- 재도전기관은 2~3개 선정하며, 기관 당 10~20팀 내외 배정 예정
- * 재도전창업팀은 전체 100팀 내외로 지원 예정(2년차지원팀 포함)
- ** 재도전기관은 2년차지원팀(직전년도 창업팀)을 제외한 재도전 창업팀을
육성: 직전년도 창업팀(2년차 지원팀)은 기존 담당기관에서 육성 예정
- *** 기관 공모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□ 사업기간

- ①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
- ② (다년 수행기관 지정) 창업지원기관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을 3년으로 하는 다년 수행기관 지정(2023년까지)
 - (대상기관) 2021년도 창업지원기관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중, 본 사업을 2018~2020년간 연속으로 수행한 기관
 - *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대표수행 사업자만 실적으로 인정
 - (선정기준) 2018~2020년 3개년간 창업지원기관 종합평가결과를 연도별 비중에 따라 합산한 결과와
 - 2021년도 창업지원기관 선정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위 10% 내외에서 선정(다년지정 기관의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)
 - * 종합평가결과 합산 비중: 18년 20%, 19년 30%, 20년 50%
 - 다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기관의 평가결과가 저조(창업지원기관의 종합평가결과 하위 10%)하거나, 기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협약을 취소하거나, 협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
 - 다년 사업수행 창업지원기관과 진흥원 간의 협약은 1년 단위로 갱신

□ 창업지원기관 역할

○ 창업팀 발굴·선정

- 창업팀 상시발굴, 사업홍보, 창업팀 모집 및 접수, 선정심사* 및 우선순위의견 제출(사전선발 포함)

* (창업팀 선정 절차) 서면심사 → 심층면접 → 대면심사

- 창업 준비 단계부터 초기 창업 단계까지 다양한 참여자 발굴 및 선정

○ 창업팀 대상 창업프로그램 운영

- 창업팀의 단계별,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

* (예시) 예비창업자는 교육, 멘토링 BM 수립 및 검증 위주
초기창업자는 창업 실무 위주

- 창업공간 제공, 담임멘토링(월 1회 이상), 전문멘토링, 교육 운영

- 민간자원 및 지역자원 등 연계, 각종 네트워크 지원

○ 창업팀 관리 및 평가

- 창업팀 사업 진행 현황 점검 및 평가(중간평가, 최종평가) 실시

- 창업팀 사업성과 관리

* 창업성공률, 매출액, 고용, (예비)사회적기업 진입 등

○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

○ 지원 종료 창업팀 대상 현황 관리 및 자원 연계

○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팀 발굴 및 접수, 대회 진행 등

-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신청기관 중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별 지원기관 선정
- 권역은 5개로 구분 : 서울/ 경기·인천 / 충청·강원 / 경상 / 전라·제주
- 창업지원기관은 소셜벤처 권역지원기관과 협력하여, 소셜벤처 경연대회 홍보·멘토링·심사 지원 등 역할 수행

□ 선정절차 및 일정(예정)

단계	일정	비고
모집공고	'20.12.22.(화)	진흥원
↓		
사업설명회	'20.12.28.(월)	진흥원
↓		
신청·접수	'20.12.22.(화)~'21.1.5.(화)	진흥원
↓		
서류심사	'21.1.7.(목)	진흥원, 중앙운영위원회
↓		
현장실사	'21.1.8.(금)~'21.1.18.(월)	진흥원
↓		
대면심사	'21.1.19.(화)~20.1.21.(목)	진흥원, 중앙운영위원회
↓		
우선험상대상자 공고	'21.1.22.(금)	진흥원

*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창업지원기관 운영 실적 평가

○ 진흥원은 창업지원기관 인큐베이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는 정성·정량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

-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은 차년도 사업 참여신청 시 개선계획을 제출

* 2021년 창업지원기관 참여 신청부터 적용

- 평가결과는 차년도 창업지원기관 선정 등에 활용

□ 신청자격

-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, 인프라, 관련 경험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(부설기관 포함)
3.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
4.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·허가 받은 법인·단체
5. 상법상법인

*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 창업지원기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

□ 신청요건

○ 지원인력

* 협약이후 제안서상의 인력을 유지하여야 하며, 인력변경시에는 사전에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

* 육성사업 지원인력이 타 지원사업에 참여시, 지원인력의 사업별 참여 비율의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- **(총괄책임자)** 창업지원기관 사업 총괄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
- **(매니저)** 창업지원기관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자로, 행정 업무 및 사업비 관리 등의 업무 수행
- **(담임멘토)** 상시상담, 전문멘토링·컨설팅 연계 등을 담당하는 자로, 전담 담임멘토(1명) 외의 인력은 창업팀 육성규모를 고려하여 창업지원기관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구성 가능
- **(전문멘토)** 창업팀에게 전문멘토링을 담당하는 자로, 분야는 ① 창업·비즈니스 멘토, ② 특정분야 멘토*, ③ Peer멘토로 구분

*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노무사 등

** 특화기관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전문멘토에 포함

- (운영위원회) 창업팀의 선정·평가 등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학계·창업지원·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

○ 창업공간 확보

- 창업팀 당 최소 7m²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, 인큐베이팅하고자 하는 창업팀 수의 50%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
- 창업공간은 창업팀 전용공간 및 교육장, 회의실 등 공통공간 포함
- 창업팀이 전용공간(최소 7m²)을 요청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창업공간에 휴게공간은 포함하지 않음
- * (예시) 20팀 육성 시 7m² 공간 × 20팀에 해당하는 140m² 중 50%인 70m² 이상의 공간(전용공간 및 교육장, 회의실 등)을 확보하여야 함
- 창업팀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자재 확보
- * 재도전 및 특화분야 기관은 위에서 규정한 창업공간에 대한 규정을 필수 사항으로 적용하지 않음

○ 창업프로그램 운영

- 창업팀 상시 발굴(상시 상담 등) 프로그램
- 상시 창업·경영 멘토링 및 교육 제공
- 민간자원 및 지역자원 등 연계, 각종 네트워크 지원
- 지원 종료 창업팀 대상 현황관리 및 후속지원
- 특화 및 재도전 기관의 경우 해당분야에 적합한 프로그램

<재도전 기관 규정 관련>

- (지원인력) 지원인력 편성은 상기 기준과 관계없이 기관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 가능
 - 단, 총괄책임자 1인은 반드시 편성하여야 하며, 담임멘토와 전문멘토 구분없이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멘토단을 구성하여야 함
 - * (예시) 매니저 1인과 분야별 전문가 5인을 멘토단으로 구성하여 창업팀 과 매칭, 월 4시간 이상 멘토링 제공하고 일부 멘토링은 기존 전문멘토링 방식을 활용
- (창업프로그램) 창업팀 당 월 4시간 이상의 심화멘토링*과 교육, 전문멘토링을 제공하되, 별도 최소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
 - * 단순 사업 추진일정 등의 관리성 멘토링은 제외

□ 모집기간 및 방법

- (모집기간) '20.12.22.(화) ~ '21.1.5.(화) 14:00 까지
- (접수방법) 이메일 접수(sebiz@ikosea.or.kr)
 - 제안서 및 첨부파일은 별도 안내한 폴더 및 파일명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,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
- (문의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☎ 031-697-7711~9

□ 신청(구비) 서류

- 참가신청공문 및 신청서, 제안서 등
 - 창업지원기관 공모 참가 신청 공문 1부
 - * 공문의 붙임으로 아래의 서류를 별첨
 - 창업지원기관 참가신청서 1부[별지 제1호 서식]
 - 창업지원기관 사업제안서 1부[별지 제2호 서식]
 - 사업제안서 요약본 1부[별지 제3호 서식]
- 붙임서류
 - 법인등기부등본 1부
 - 법인인감증명서 1부
 - * 사용인감 사용 시, 사용인감계 1부도 함께 제출
 -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 날인) 1부
 -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[붙임1]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[붙임2]
 - * 사업제안서상에 기재된 인원 모두 작성·제출

- 서약서 1부[붙임 3]
-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모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[붙임4]
- * 수급협정서 상 기재된 내용 확인 후 작성
-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

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“입찰보증금 지급확약”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,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(귀속)하여야 하며,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

○ 증빙서류

- '19년 결산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) 1부
- 사회적경제기업 등 창업지원 관련 지원조직 및 멘토링 역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* 창업지원기관 소속 또는 협약체결(예정) 멘토 현황 및 멘토의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, 자격증 사본,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관련 경험
 - ** 실제 참여가능 인력으로 작성하되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삭제
-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전문성 및 창업지원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관련 사업 협약서 등)
- 기타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

□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- 서류는 e-mail로 제출하되, 서류의 종류별로 폴더를 생성한 후 아래의 파일 리스트를 참조하여 해당 폴더에 저장
- 최종 3개의 폴더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해당 파일 1개를 메일 첨부파일로 송부
- 폴더는 '참가신청서', '붙임서류', '증빙서류' 등 3가지 해당

- 파일은 모두 pdf로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pdf 파일과 한글 파일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
- 이미지 첨부시 파일 용량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사진 해상도 및 사이즈 조절 등 조치 요청
- PDF로 변환시 2면 인쇄(A4 가로로 1장에 2면 출력) 형태로 저장되지 않도록 유의
- 서류 검토시 진흥원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

<파일명 및 제출 방법>

○ 다음과 같이 폴더를 만들어서 각 해당 폴더에 파일을 위치하여 zip 파일로 압축하여 압출파일 1개만 이메일에 첨부

(압축) [권역-00/특화-00_창업지원기관명_참가신청서.zip]

(폴더) [1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참가신청서]

- (파일) [1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참가신청공문.pdf]
- (파일) [2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참가신청서.pdf]
- (파일) [3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사업제안서.pdf]
- (파일) [3-1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사업제안서.hwp]
- (파일) [4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제안서 요약본.pdf]
- (파일) [4-1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제안서 요약본.hwp]

(폴더) [2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붙임서류]

- (파일) [1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법인등기부등본.pdf]
- (파일) [2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법인인감증명서.pdf]
- (파일) [2-1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사용인감계.pdf]
- (파일) [3.권역-00-00_창업지원기관명_사업자등록증.pdf]
- (파일) [4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청렴계약이행서약서.pdf]
- (파일) [5-1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_정인지.pdf]
- (파일) [5-2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_신속주.pdf]
- (파일) [6.권역-00-_창업지원기관명_서약서.pdf]
- (파일) [7.권역-00-_창업지원기관명_공동도급수급협정서.pdf]

(폴더) [3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증빙서류]

- (파일) [1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2019년 제무제표.pdf]
- (파일) [2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증빙서류명.pdf]
- (파일) [3.권역-00_창업지원기관명_증빙서류명.pdf]

□ 공동수급에 대한 유의사항

- 필요한 경우 복수의 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
 - *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“공동이행방식”만 가능
 - ** 구성원 수는 5인 이하,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% 이상
 - ***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 및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 불가

3

창업지원기관 선정

□ 심사절차

- 창업지원기관은 ①서류심사 → ②현장실사 → ③대면심사 등 총 3단계를 통해서 선정

심사단계	주요내용
서류심사	○ 창업지원기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자격, 요건, 현장실사 여부 등 평가
↓	
현장실사	○ 서류심사에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진행 * 지원인력 및 창업공간 확보 등 점검
↓	
대면심사	○ 현장실사 후,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인 큐베이팅 추진 계획 등 대면 평가 실시 * 대면심사 발표자료는 제안서 요약본(역량표)로 같음

* 세부내용은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

□ 심사방법

- 창업지원 인프라,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성, 멘토링, 교육, 자원연계, 창업팀의 사후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*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등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심사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고유권한임
- 모집분야별로 심사위원 전체평균이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 선정
 - 평가점수의 85%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
 - *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”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추진

□ 심사기준

○ 서류심사(권역기관)

심사항목	세부항목	심사내용	배점
사업추진 의지 (25)	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(10점)	○수행업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및 추진의지 ○창업팀 발굴·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전 략과 방향의 적정성	25점
	사업 목표 및 계획(10점)	○사업의 주요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	
	수행조직 구성 및 규모(5점)	○희망 육성 창업팀 수와 사업전담조직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	
사업추진 역량 및 인프라 (55)	창업 지원인력 (15점)	○신청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○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(이력) 및 전문성 ○전문멘토의 전문성 및 Pool 구성의 적정성 ○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	55점
	창업 준비공간 (10점)	○확보된 창업공간의 적정성(면적, 입지여건, 기자재 및 장비 등) ○공간 운영계획의 효율성	
	창업지원 프로그램 (20점)	○신청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프로 그램(교육, 멘토링 등)의 적정성 ○창업팀 평가,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의 적정성	
	자원연계 (10점)	○외부 전문가 활용 능력 ○지자체, 유관기관, 대학 및 연구소, 민간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·동원 능력	
사회적경제 및 창업지원 영역에 대한 전문성 (20)	사회적경제 및 인증제도 이해 정도(10점)	○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○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	20점
	창업지원 관련 추진실적(10점)	○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	

○ 서류심사(재도전 및 특화기관)

심사항목	세부항목	심사내용	배점
사업추진 의지 (20)	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(10점)	○수행업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및 추진의지 ○창업팀 발굴·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전 략과 방향의 적정성	20점
	사업 목표 및 계획(10점)	○사업의 주요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○희망 육성 창업팀 수와 사업전담조직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	
사업추진 역량 및 인프라 (60)	창업 지원인력 (20점)	○신청분야(재도전/특화)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○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(이력) 및 전문성 ○전문멘토의 전문성 및 Pool 구성의 적정성 ○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	60점
	창업 준비공간 (5점)	○확보된 창업공간의 적정성(면적, 입지여건, 기자재 및 장비 등)	
	창업지원 프로그램 (20점)	○신청분야(재도전/특화)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프로그램(교육, 멘토링 등)의 적 정성 ○창업팀 평가,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의 적정성	
	자원연계 (15점)	○외부 전문가 활용 능력 ○자본조달 및 판로 등 사업추진 관련 대외 자원 연계·동원 능력	
사회적경제 및 창업지원 영역에 대한 전문성 (20)	사회적경제 이해 정도(10점)	○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○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체계	20점
	창업지원 관련 추진실적(10점)	○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	

○ 대면심사(권역기관)

심사항목	세부항목	심사내용	배점
자질능력 (45점)	운영능력(15점)	○ 신청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(총괄책임자, 멘토, 매니저 등) 구성의 적정성 ○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(경력) 및 전문성	45점
	사업의 이해도 (10점)	○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	
	자원 연계 역량 (10점)	○ 지자체, 유관기관, 대학, 민간기업, 프로보노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·동원하여 사회적경제 발굴·육성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	
	창업팀 성장지원 계획 및 능력(10점)	○ 신청권역과 창업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프로그램(교육, 멘토링 등)의 적정성 ○ 창업팀 평가,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	
태도 (20점)	프로젝트 책임성 (10점)	○ 사업의 성공여부를 위해 자체 자원 및 역량,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○ 희망 육성 창업팀 수와 창업팀 모집 계획의 적정성	20점
	과제성공에 대한 확신성(10점)	○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,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	
사회적기업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수행경험 (35점)	(예비) 사회적기업 지원역량(10점)	○ 사회적일자리 사업, 사회적기업 설립(인증) 제도 등 (예비)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(컨설팅)역량	35점
	사회적기업 창업 이해(10점)	○ 일반창업이 아닌 사회적기업 창업의 차별화 전략	
	수행경험(15점)	○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	
가점 (4)	우수 창업지원기관 (2점)	○ 최근 2년 이내 진흥원으로부터 우수 창업지원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	4점
	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지원기관 (2점)	○ 직전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지원기관	

○ 대면심사(재도전 및 특화기관)

심사항목	세부항목	심사내용	배점
자질능력 (50점)	운영능력(10점)	○ 신청분야(재도전/특화)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○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(이력) 및 전문	50점
	사업의 이해도 (10점)	○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	
	자원 연계 역량 (15점)	○ 경영역량 강화, 판로확대, 자금조달 등 창업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연계 능력	
	창업팀 성장지원 계획 및 능력(15점)	○ 신청분야(재도전/특화)와 창업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프로그램(교육, 멘토링 등)의 적정성 ○ 창업팀 평가,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	
태도 (20점)	프로젝트 책임성 (10점)	○ 사업의 성공여부를 위해 자체 자원 및 역량,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○ 희망 육성 창업팀 수와 창업팀 모집 계획의 적정성	20점
	과제성공에 대한 확신성(10점)	○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,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	
사회적경제 에 대한 이해 및 수행경험 (30점)	(예비) 사회적기업 지원역량(5점)	○ 사회적일자리 사업, 사회적기업 설립(인증) 제도 등 (예비)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(컨설팅)역량	30점
	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이해(10점)	○ 일반창업이 아닌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차별화 전략	
	수행경험(15점)	○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	
가점 (4)	우수 창업지원기관 (2점)	○ 최근 2년 이내 진흥원으로부터 우수 창업지원 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	4점
	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지원기관 (2점)	○ 직전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지원기관	

□ 창업지원기관 선정

- 창업지원기관 선정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 기관과 우선협상 실시 및 협약 체결
- 창업지원기관별 육성 가능 창업팀 수 배정(안) 결정
 - * 추후 창업팀 모집 결과에 따라 진흥원에서 최종 조정

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

5 주의사항

-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시 공모기관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(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),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
- 본 공모사업 신청 관련 일체의 비용은 공모참가자 부담으로 함
-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 - *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

- 사업수행 중 요건 미충족, 범위반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
 - 현장점검을 통해 요건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, 진흥원은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미시정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 -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, 법적 쟁송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의 경우 잔여 사업비 환수 및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
- 공모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“입찰에 관한 서류”를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
- 본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우선협상 완료 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까지는 진흥원 사정에 따라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입찰참가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계약체결 시 「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」, 「(조달청지침)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」 등을 계약사항으로 할 것
- 「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」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,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이 불가함. 단, 고유식별정보 중 생년월일만을 명시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부분(주민등록번호 뒷자리)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함

6

사업설명회 개최

- * 본 사업설명회는 창업지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육성사업에 참여할 창업팀 모집 및 선정에 대한 설명회는 '21년 1월 말(예정) 별도 모집 공고 후 진행 예정
- (일시) '20. 12. 28.(월) 14:00
- (추진방법) 화상회의 프로그램(ZOOM) 활용
 - * 사전 접수한 자에 한하여 시작 30분 전 URL 주소 발송
접속자 수가 최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, 기관당 1~2명만 신청바라며,
동일 기관에서 다수의 자가 신청한 경우,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
 - (사전접수 링크) <https://forms.gle/tp4SYkTjgMTnBL2b8>
- 내용
 - '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방향
 -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공모 사항 안내 등